

'25년 서울뷰티허브 하반기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연장)

서울 소재 유망 뷰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뷰티허브 하반기 지원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모집하오니, 관련 분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8. 14.
서울특별시

I. 서울뷰티허브 소개

- 시설위치 : 서울시 중구 마장로 22 **DDP패션몰 3층**
- 운영시간 : 월 ~ 금, 10:00 ~ 20:00
- 핵심기능 : 뷰티 중소 유망기업 대상 디자인, 마케팅, 해외진출, 교육 등 전방위 지원
- 시설구성 (* 붙임1 참조)

연번	명칭	기능	내용
1	비즈니스라운지	마케팅	참여기업 제품 상시 전시 및 뷰티 행사 개최
2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및 실시간 판매 방송 진행
3	미디어실		콘텐츠 제작(기획, 편집, 업로드 등)
4	메이크업실		콘텐츠 촬영 준비 및 제품 시연·강의
5	글로벌마케팅 지원실	해외진출	비즈니스 회의 및 바이어 상담
6	생산지원실	디자인	뷰티용기 전시 및 디자인 정보 제공
7	라벨제작실		뷰티용기 라벨 디자인 및 출력 등 실무 지원
8	다목적홀	교육	전문가 강연, 북콘서트, 세미나 등 뷰티 행사 개최

II. 모집개요

- 공 고 명 : '25년 서울뷰티허브 하반기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지원내용 : 브랜드 맞춤형 마케팅 지원, 단계별 해외수출 지원, 글로벌 패키징 실무 지원 등
- 지원기간 : 2025. 9 ~ 12월
- 모집기간 : 2025. 8. 14(목) ~ 8. 25(월) 12:00
 ※ 당초 모집기간 : 2025. 7. 28. ~ 8. 14.(목)
- 모집규모 : 총 50개社
- 모집분야 : 일반화장품, 비건화장품, 이너뷰티, 뷰티테크
- 신청자격 : 화장품 완제품 등을 보유한 서울 소재 유망 중소 뷰티 기업
 - 지역 :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 기준)
 - 업종 : 화장품법 제2조의1, 2, 3에 따른 화장품업
 ※ 단, 수입화장품 제외(제2조의2의 다,라, 제2조의3 수입화장품)
통신기계기구·응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기업
 - 규모 :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초기 창업기업, 하이서울 인증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가점 부여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네이버폼 양식 제출)
 - (신청서식)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 (서류제출) [네이버폼\(https://naver.me/5yW4bhYO\)](https://naver.me/5yW4bhYO)을 통해 아래 번호 순서대로 파일을 제출 (※ 파일명 : 문서번호. 문서명(세부내용)_기업명)
 (예시 : 6-2. 특허권(취득일, 00기술 특허)_ (주)000)

번호	목 록	제출양식 / 참고사항
1	참가 신청서 & 서약서 (필수)	※ 서식 1 (제출시 PDF변환)
2	전시품목 상세서 (필수)	※ 서식 2 (제출시 PDF변환)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서식 4 (제출시 PDF변환)
4	정량평가 및 가산점 자가진단표 (필수)	※ 서식 5 (제출시 PDF변환)
5	자격요건 증빙서류	※ 미제출 시 선정 제외
5-1	- (지역) 사업자등록증 (필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국세청 발급분
5-2	- (업종) 화장품제조업 / 책임판매업 /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등록필증 (필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분 ※ 뷰티테크기업의 경우 보유 시 제출
5-3	- (규모) 중소기업인증 확인서 (필수)	- 유효기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

6	정량평가 증빙서류	※ 미제출 시 항목별 최하점 부여
6-1	- 최근 3년('22~'24년) 수출 실적 증빙자료 (필수)	- 수출신고필증(관세청 발급분) 또는 수출입실적증명서(KITA 또는 KTSTAT 발급분) 등
6-2	- 지적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 준비 증빙자료 (필수)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 등), 해외규격인증(ISO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GOOD DESIGN 등), 우수기술 인증(Net·KT·EM·상글PPM·GQ 등), 국내외 품질인증(서비스 포함) 등
7	가산점 증빙서류 (보유시 제출)	※ 미제출 시 가산점 인정 제외
7-1	- 초기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7-2	- 하이서울 인증기업(하이서울 기업 지정서)	- 서울경제진흥원(前 서울산업진흥원) 발급분
7-3	-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 친환경·천연재료 사용 여부(식품의약품안전처) - 비동물실험·비건 인증(한국비건인증원 등) - 사회공헌활동이력(수익, 생필품 기부 등)
8	기업 카탈로그 및 제품 소개자료 (보유시 제출)	- 국문(필수), 영어 및 기타 언어(선택)

Ⅲ. 세부 지원내용 (※ 세부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마케팅) 브랜드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온·오프라인 상설 전시

- 뷰티허브 내 전시공간(비즈니스라운지)과 홈페이지(www.seoulbeautyhub.kr/brand-directory)를 통해 참여기업 제품 전시

※ 오프라인 전시는 기업별 최대 제품 8종 선택 가능 (2주마다 위치 변경)

※ 선정된 기업은 전시를 위한 제품 종류별 2개(필수), 카탈로그 및 제품 소개 자료(선택), 온라인 제품 정보(선택)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 비즈니스라운지 전경 >



< 전시 쇼룸 >

○ 인플루언서 연계형 마케팅 지원

- 브랜드 특성에 맞춘 인플루언서 매칭, 숏폼 형태 홍보영상 등 제작
- 인플루언서 중계 플랫폼을 통한 제품 체험후기 등 바이럴 콘텐츠 확산

○ AI 기반 마케팅 콘텐츠 지원

- 생성형 AI를 활용한 홍보 이미지 및 SNS 게시물 등 브랜드 맞춤형 콘텐츠 제작
- 콘텐츠 기획부터 구현까지 전 과정 실습으로 기업의 자체 마케팅 역량 강화

□ (해외진출) 단계별 해외 수출 지원

○ 국가별 수출 인증지원

- 수출 대상국의 규제·통관절차 등 유통 환경에 대한 실무 컨설팅 제공
- 현지 유통에 필요한 주요 인증(CNP, FDA 등록, 할랄·비건 인증 등) 취득 비용 일부 지원
※ 참여기업의 수요와 선정심사 점수를 반영하여 최대 15개社, 기업별 1백만원 내 지원 예정

○ 글로벌 바이어 매칭 및 상담 지원

- K-뷰티 수요가 높은 국가(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중심 1:1 바이어 매칭
- 국내외 유력 바이어 초청 및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회의 운영

□ (디자인) 글로벌 패키징 실무 지원

-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 컨설팅 제공
- 국가별 정보 표시 기준에 따른 라벨 전문가 교육 운영

【 화장품 라벨 전문가 교육과정 개요 】

- 교육일정 : 차수별 2일 과정
(1차) 09. 17.(수), 09. 25.(수) / (2차) 10. 22.(수), 10. 29.(수)
(3차) 11. 19.(수), 11. 26.(수) / (4차) 12. 10.(수), 12. 17.(수)
- 교육시간 : 14:00 ~ 17:10 (3시간)
- 교육장소 : 서울뷰티허브 생산지원실
- 교육대상 : 뷰티산업 종사자 (※ 참여기업 우선 배정)
- 교육인원 : 차수별 16명 (총 64명)
- 교육내용 : 국가별 필수 기재사항, 라벨 가공 기법, 품질관리 등
- 신청방법 : 네이버폼 신청 (※ 모집 일정 및 신청 링크 등 추후 안내)

□ (교 육) 기업수요 기반 전문교육 및 세미나 운영

○ 수요조사를 통한 참여기업 맞춤형 교육·세미나 진행

- 신청서(서식1) 작성 시 ‘① 제품 기획·개발, ② 마케팅, ③ 유통·수출, ④ 인증·등록, ⑤ 최신 뷰티 트렌드’ 중 1~5 순위 선택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0월부터 월 1회 이상 교육·세미나 운영 예정
- ※ 자세한 교육/세미나 일정 및 신청 방법 등은 추후 안내

□ (시 설) 대관 신청

○ 사전 예약제 운영 (※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

연 번	명 칭	면 적	신청예시	운영시간	신청한도
1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A	44m ²	브랜드 라이브커머스 진행, 제품 촬영, 메이크업 방송	월~금 10:00 ~ 20:00	기업당 월 20일 일 4시간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B	37m ²			
2	미디어실	23m ²	메이크업 시연 및 강의, 브랜드 마케팅 기획 회의		
	메이크업실	19m ²			
3	글로벌마케팅 지원실	46m ²	글로벌 바이어 상담, 비즈니스 회의		
4	다목적홀	108m ²	뷰티 관련 교육, 각종 뷰티 비즈니스 행사		

※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해 동일 기업의 반복적 대관은 조정될 수 있음

※ 장비 또는 비품 훼손 시 사용자에게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무단사용, 목적 외 사용, 제3자 대여는 금지되며, 적발 시 향후 대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IV. 선발계획

□ 평가방법

- 정량평가(20점) : 평가항목에 따라 운영사가 절대평가
 - ※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가 없을 시 평가 항목별 최하점 부여
- 정성평가(80점) :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이 상대평가
 - (심사위원회) 뷰티산업, 유통·수출, 마케팅 분야 관련 전문가 5인
 - ※ 항목별 평가 기준(점수 배점)은 최저 수치와 최고 수치를 제외하고 평균화 예정
- 가산점은 총점 100점 내에서 최대 3점까지 부여
- 합산점수 동일 시 설립일이 최근인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8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수출실적	• '22~'24년(최근 3년) 평균 수출액*	마케팅 역량 (기존 브랜드 마케팅의 적합성 및 창의성)	20
	- 2억원 이상 : 10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9점		
	- 5천만원 미만 : 8점		
- 없음 : 7점	수출 역량 (중장기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	20	
수출준비	• 지적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등 보유	제품 차별성 (기능적 우수성 및 디자인 독창성)	20
	- 3건 이상 : 10점		
	- 2건 : 9점	사업 참여의지 (사업 이해도, 신청서 작성 충실도, 지원 이후 성장 가능성)	20
	- 1건 : 8점		
- 없음 : 7점			
가산점	초기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개업 연월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1
	하이서울기업*에 등록된 기업 (* https://hiseoul.sba.kr)		1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친환경·천연제품, 할랄·비건 인증, 수익·생필품 기부 등)		1

※ 수출실적 : 최근 3년('22~'24년) 중 수출 실적이 없는 연도는 평균 계산에서 제외하고 평가 (예시) '22년 2억원, '23년 없음, '24년 2억원인 경우 '(2억원 + 2억원) / 2 = 2억원'으로 계산하여 10점 부여

※ 수출준비: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 등), 해외규격인증(ISO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Good Mark 등), 우수기술 인증(NT·KT·EM·싱글PPM·GQ 등), 국내외 품질인증(서비스 포함)

□ 유의사항

- '25년 서울뷰티허브 상반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본 모집공고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참가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거나 참가규정 위반 시 추후 서울시의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제출기일 경과 시 참가신청 포기로 간주함
- 선정이 취소되거나 기업에서 불참하는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참가기업 5개社 선발 (※ 결원 발생 시 예비 기업 중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서울시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해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판매계약, 유통사와 참가기업 간 계약 등에 대해 경영적·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함
- 제품 성분(INGREDIENT) 중 진출시장 기준 수입 불가한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글로벌 바이어 매칭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의 추진일정 및 지원사항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향후일정

- 선발결과 발표 : '25. 9. 1.(월)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별도 안내 예정
- 하반기 지원사업 진행 : '25. 9월 ~ 12월

□ 문의처

- (서울뷰티허브) 02-6270-2000, sbhub2@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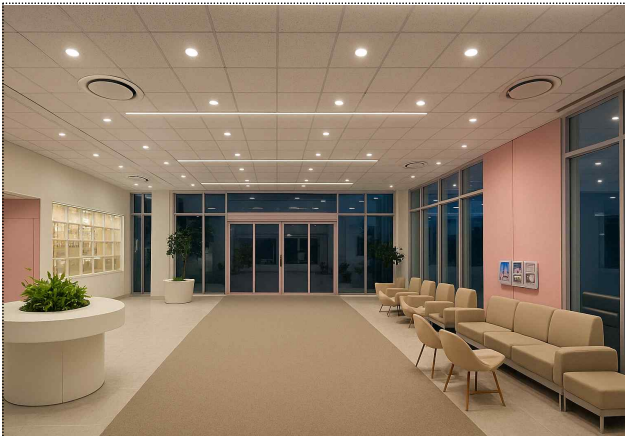
붙임 1. 서울뷰티허브 공간 사진 1부.
2. 신청자격 세부조건 1부.

별첨 1. 제출서식 각1부. 끝.

□ 시설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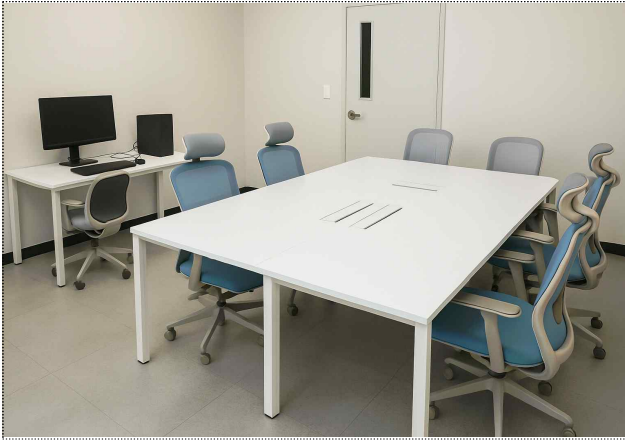
□ 시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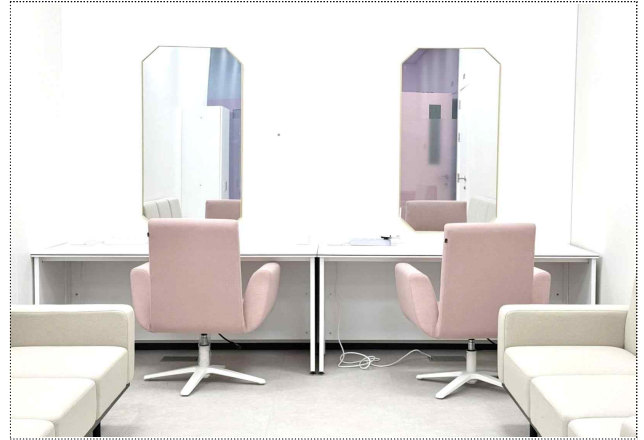
< 비즈니스라운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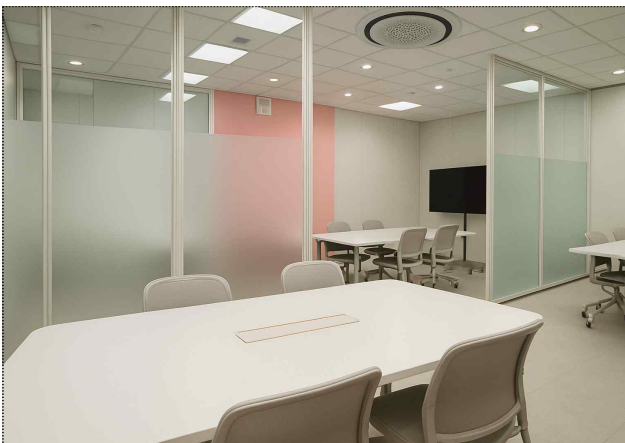
<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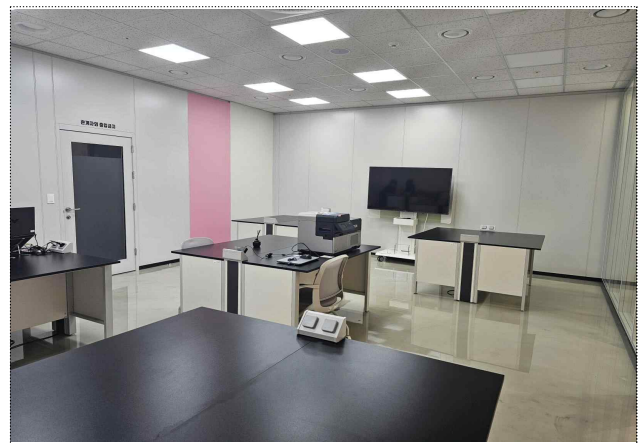
〈 미디어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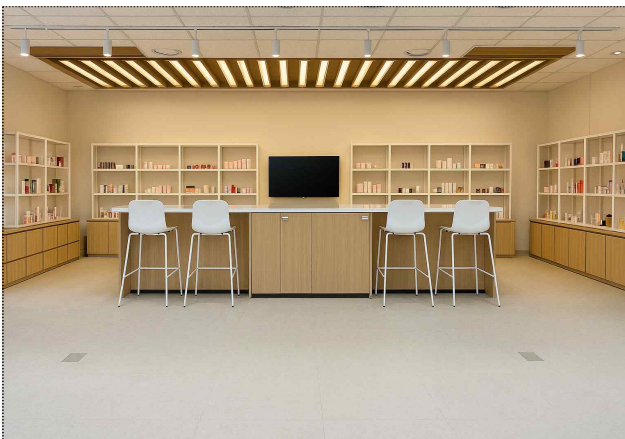
〈 메이크업실 〉



〈 글로벌마케팅 지원실 〉



〈 라벨제작실 〉



〈 생산지원실 〉



〈 다목적홀 〉

□ 모집대상 : 서울소재 화장품·뷰티테크 중소기업

○ 지역 : 서울특별시 소재(사업자등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업 종

① 「화장품법」 제2조의1,2,3에 따른 **화장품업**

※ 단, 수입화장품 제외(제2조2의 다,라, 제2조의3 수입화장품 제외)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1. 화장품제조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가.化妆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가化妆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化妆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化妆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化妆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化妆품을 판매하는 영업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化妆품을 판매하는 영업② 통신기계기구·응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 기업***

* 뷰티테크(Beauty-tech)란 미용(Beauty)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용어로, AI, AR, VR, IoT, 빅데이터, 3D프린팅, 얼굴인식 기술, 로봇, 딥러닝, 유전자검사 등 기술을 포함하며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의 분야에 적용

※뷰티테크 기업 예시

-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바탕으로 AI분석 기반 맞춤형 네일 코스메틱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업체
- 유선통신장비제조업을 바탕으로 맞춤형화장품 구독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용 IoT 피부진단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바탕으로 피부촬영을 위한 이동형 촬영장치를 생산하는 업체
- 통신기계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컬러 및 패턴이 가능한 1초 타투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업체
- 기타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기업

※ 산업영역 규정 기준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분류)에 따른

○ 규 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